

군산시 공고 제2013 - 653호

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행정예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13. 4. 10.

군 산 시 장

1. 행정예고 내용

-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'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'에서 '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'로 2시간 연장함

2. 관련근거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)
-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~ 제47조(처분의 사전통지 ~ 준용)
-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3. 4. 10 ~ 2013. 4. 30(20일간)

4. 대규모점포등 현황

구 분	계	이마트	롯데마트	GS수퍼	이마트 에브리데이	비 고
대 형 마 트	2	1	1			
기업형수퍼 (SSM)	2			1	1	

5. 의견제출 기간 : 2013. 4. 10 ~ 4. 30일까지(공휴일 포함)

6. 의견제출

- 열람방법 : 군산시청(www.gunsan.go.kr)홈페이지, 시보
- 접수기관 : 군산시 지역경제과
- 제출기간 : 2013. 4. 30(화) 18:00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인터넷, 우편 등(우편은 4. 30일 도착분 까지)
- 기재내용 :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의견내용
- 제출 및 문의처 : 군산시청 지역경제과
 - 주 소 : (우 573-703) 전북 군산시 시청로17(조촌동,군산시청)
 - 전화/팩스 : 063) 454-2703 / 063) 450-6391

□붙임 1□

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사업명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전화번호	
	주소		
사업명	검토의견(의견 제출내용)		

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3년 4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군산시장 귀하